

부산지방법원 2021. 11. 18 선고 2020가단1228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2. 8. 31 선고 2021나69240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1. 11. 18 선고 2020가단12284 판결

전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해 담당변호사 문주호, 박상욱

변 론 종 결 2021. 5. 13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8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1)

에 관하여 한 2020. 3. 16.자

상속재산분할협의를 38,222,2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8,222,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발생

D은 1999. 12. 22. 원고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을 하고,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3. 4. 22. 원고로부터 10,100,000원을 E 대출(원리금분할상환)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여 2020. 8. 19.자 기준으로 한 연체금액은 56,611,474원(원금 8,654,249원, 이자 1,145,361원, 연체료 46,811,864원, 이하 ‘이 사건 채권’이라 한다)이다.

나.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

1) D의 아버지 망 F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 한다)의 소유자였는데, 2020. 3. 16. 사망하였다. 당시 망 F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였고, 망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, 자녀인 D, G, H이 있었다.

2) 망 F의 상속인들은 2020. 5. 4.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고, 피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. 5. 8. 접수 제28165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3) 피고는 2020. 5. 21.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. 3. 23.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등기된 채권최고액 48,000,000원, 채무자 F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

말소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초과 상태의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속지분 상당액을 가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- 1)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.
- 2)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 F의 유언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경위 등에 피고 기여분이 커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.
- 3)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존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, 선의의 수익자이다.

다.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성립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전부터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,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

가)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.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,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채권이 2003. 4. 22. 발생한 후 연체된 2003. 6.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로부터 3년 내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0. 8. 31.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.

나) 이에 대하여 원고는, 원고가 D을 상대로 2006. 9. 27. 부산지방법원 2006타채13418호로

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이하 ‘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’이라 한다)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.

압류,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(민법 제176조),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사실을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, 이것이 우편송달(발송송달)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다26097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의 경우 위 채권 압류사실이 D에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, 오히려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은 2006. 11. 23. D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위 채권압류 사실이 D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) 결국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행위취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우경아

별지목록

1동의 건물의 표시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
 아파트 동

[도로명주소]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구 조 : 철근 콘크리트조

면 적 : 8 층 호 59.80㎡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)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<input type="text"/> 대 | 28602㎡ |
| 2)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<input type="text"/> 대 | 17710㎡ |
| 3)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<input type="text"/> 대 | 5806㎡ |
| 4)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<input type="text"/> 대 | 1083㎡ |
| 5)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<input type="text"/> 대 | 4177㎡ |

대지권의 종류 : 1, 2, 3, 4, 5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57378 분의 21.96

- 관할등기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-

1)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D의 지분을 특정하지 않았으나,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.